

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
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수수료 부과·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수료 부과 개별기준 수정(안 별표)

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(구.보건증) 수수료 부과 기준 신설
- 건당 수수료 3,000원 부과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
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[별표]

제증명발급 수수료 (제6조제1항 관련)

구 분	기준	수수료(원)	비 고
1. 일반진단서	1건	500	1회 방문 당 수가 가산
2. 건강진단서 (채용 및 기숙사입소용)	”	500	근로자 및 그 밖의 신청자(각종검사수가 및 1회 방문 당 수가 가산)
3.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(구,보건증)	”	3,000	
4. 결핵검진 확인서 (외국인 체류연장 시)	”	500	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근거
5. 기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	”	300	
6. 운전면허 적성검사	”	「도로교통법」 제13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·공고하는 금액	

관계법령

□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

제5조(수수료)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23. 11. 22.> [시행 2024. 11. 23.]

소 관 부 서		보건의료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임 명 섭
	팀 장	박 동 주
	담 당 자	신 동 미 (480-4006)